

2024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2차 연장) 공고

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「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」 제6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'2024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2차연장) 공고' 일정을 안내하오니,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6월 25일
국토교통부

1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개요

□ (연장 개요)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

구분	연장기간	해당대상
1차연장	1년	기본 지정기간(3년)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
2차연장	2년	1차 연장기간(1년)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

※ 관련근거

-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(대통령령 제33665호) 제33조 제2항
- 「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」 (기획재정부훈령 제672호) 제6조의2

○ 금회 공고건은 '2차연장' 사항에만 해당

2 신청 대상 및 추진절차·일정

□ (대상)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기업으로서, 1차 연장기간(1년)의 만료*가 도래되는 혁신제품**을 보유한 기업

*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: '24.10.28.

** 금회 신청대상 혁신제품 현황 및 서류 제출처 : '별첨' 참조

□ 추진절차

- ①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
- ②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
- ③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
- ④ 최종 연장 승인

* '24.10月 내(예정)

③ 지정기간 연장 신청 대상 및 제외대상

□ 연장신청 대상

☞ 공공성·혁신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을 2차 연장 신청 대상으로 함

(1) 공공성 요건

- 아래의 '가'항 부터 '라' 항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

가. 1차 연장기간(1년)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

나. 1차 연장기간(1년) 동안 공공조달 계약 체결하였으나 미납품

다. 1차 연장기간(1년) 동안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·표창

라. 기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

구분	항목	세부사항
가	1차 연장 기간(1년)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(최소 1건 이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정기간 내 공공기관 조달 실적 ○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 조달 실적
나	1차 연장 기간(1년) 동안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(최소 1건 이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의 계약 ○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과의 계약
다	1차 연장기간(1년) 동안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·표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○ 중앙관서 시상·표창 중 혁신제품 지정 부처의 장이 인정하는 것에 한함
라	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공기관이 구매확약을 제시하는 경우 ○ 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

【예외사항(조건부 신청 대상)】

1차 기간연장 후, 만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2차 연장 신청·접수의 경우, 상기의 '공공성' 인정 요건이 불충족 하더라도 신청 대상으로 예외적 신청 가능*

* '공공성' 요건이 불충족한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, 반드시 불임의 '조건부 신청 협약서(불임5)'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함.

(2) 혁신성 요건

-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사기술이 없거나 기술이 탁월하여 위원회에서 혁신성을 인정하는 경우

□ 연장신청 제외 대상

-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'신청대상에서 제외'

가.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

- 연장 신청 기간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

나.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

- 혁신제품에 적용된 지식재산권(특허·실용신안)의 기간만료, 등록취소, 양도, 전용실시권 만료 등으로 기술권리가 상실된 경우

다. 지정된 혁신시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

-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

라.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*(물품식별번호 기준)

- 혁신제품 지정제품(물품식별번호) 중 일부라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

4 신청 서류

□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, 해당 시 서류는 해당할 경우에만 제출

(1) 공공성 평가자료

번호	구 분		필수여부	비고	
1	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		필수	붙임1	
2	서류제출 신뢰서약서		필수	붙임2	
3	신청자격 증빙자료 (반드시 1개 이상 제출 필요)	3-1 ^{비고1}	납품실적목록 *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	해당 시	붙임3
		3-2 ^{비고2}	구매계약서 *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	해당 시	-
		3-3 ^{비고3}	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기관 표창	해당 시	-
		3-4 ^{비고4}	구매확약서	해당 시	붙임4
4	혁신제품 지정 인증서		필수	-	
5	조건부 신청 확약서 *상기 3번 신청자격 항목을 지정기간 만료 전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		해당 시	붙임5	

비고1) 1차 연장기간(1년) 동안 국내·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
(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조달 실적 확인이 곤란한 수기계약·해외조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제출)

비고2) 1차 연장기간(1년) 동안 계약 체결 등 공공조달 매출이 예정된 경우

비고3) 1차 연장기간(1년) 동안 중앙관서 시상 표창으로 매출이 예상되는 경우

비고4)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, 공공기관이 해당 혁신제품에 대한 구매확약을 한 경우

(2) 혁신성 평가자료

- '공공성 평가' 통과제품 또는 '조건부 신청 확약' 제품 보유기업을 대상으로 향후 별도로 제출서류 안내 예정 ('24년 7월 중)

⑤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등 안내

□ 신청기간 : 공고일부터 '24. 7. 5.(금) 18:00까지

※ 기업은 반드시 신청기간을 엄수해야 하며, 신청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건에 한해서만 연장 검토됨을 안내드립니다.

※ 접수 마감일에는 시스템 등의 과부화로 인해 접수가 지연될 수 있으니, 마감일 이전 접수를 권고 드립니다.

□ 신청방법

○ ④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아래 유형별로 제출

구 분	지정유형	접수(신청)방법
(분야1) 연구개발 혁신제품	우수연구개발	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(https://hub.kaia.re.kr)를 통해 제출 (‘기업참여’ - ‘혁신제품 지정신청’ 게시판)
(분야2) 혁신성 인정제품	①교통신기술	
	②물류신기술	
	③중소기업기술마켓 (SOC 공공기관 협의체)	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(jbs92@ex.co.kr 또는 nam1793@ex.co.kr)
(분야3) 혁신정책 연계형 제품	①스마트챌린지	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(https://hub.kaia.re.kr)를 통해 제출 (‘기업참여’ - ‘혁신제품 지정신청’ 게시판)
	②리빙랩(드론)	
	③리빙랩(ITS)	

□ 문의처

지정유형	평가기관(담당부서)	담당자	이메일(연락처)
(분야1) 우수연구개발 (분야2) ①교통신기술 ②물류신기술 (분야3) ①스마트챌린지 ②리빙랩(드론) ③리빙랩(ITS)	국토교통과학 기술진흥원 (사업화지원Hub실)	김민혁 선임연구원	mhkim07@kaia.re.kr (031-389-6371)
(분야2) ③중소기업 기술마켓 (SOC 공공기관 협의체)	한국도로공사 (통합기술마켓추진단)	김선엽 차장	nam1793@ex.co.kr (054-811-2435)
		정범수 대리	jbs92@ex.co.kr (054-811-2434)

※ 전화에 앞서, 궁금한 사항을 간단히 정리하여 이메일로 먼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.

별첨

지정기간 연장(2차) 관련 신청대상 혁신제품 현황

□ 대상현황 : 총 15건

○ 지정기간 : '20.10.29. ~ '24.10.28. (4년)

구분	혁신제품명	혁신기업	지정번호	지정분류
1	도심 트램용 선로 시스템	주식회사 이알에스	2020-275	교통신기술(NET)
2	실시간 지반안정성 감지 장치	(주)쓰일텍코리아	2020-277	건설신기술(NET)
3	철도전용 한국형 열차제어 시스템	주식회사 테크빌	2020-281	공모우수제품
4	실시간 고속철도 신호설비 검측시스템	주식회사 테크빌	2020-282	공모우수제품
5	철도 긴급상황 배전보호 차단기	인텍전기전자 주식회사	2020-283	공모우수제품
6	빅데이터형 전차선로 이상 유무 판별시스템	투아이시스 주식회사	2020-285	공모우수제품
7	공동주택용 스마트 온수 절약 시스템	진명홈바스(주)	2020-289	중소기업기술마켓 (SOC 공공기관 협의체)
8	탄소배출 저감 항공 전원공급 장치	이화전기공업 주식회사	2020-290	중소기업기술마켓 (SOC 공공기관 협의체)
9	누수방지 및 소음저감 교량 연결 장치	누리이앤씨 주식회사	2020-291	중소기업기술마켓 (SOC 공공기관 협의체)
10	터널균열방지 복합구조 배수장치-배수형 방수시트	이정테크 주식회사	2020-292	중소기업기술마켓 (SOC 공공기관 협의체)
11	재활용성 복합소재 교량 바닥재 설치장비	주식회사 성현테크	2020-293	중소기업기술마켓 (SOC 공공기관 협의체)
12	공사비 절감 교량 지지 장치	주식회사 큐빅스	2020-294	중소기업기술마켓 (SOC 공공기관 협의체)
13	유해물질 없는 친환경 도로포장재	주식회사 에프씨코리아랜드	2020-299	중소기업기술마켓 (SOC 공공기관 협의체)
14	이중 나선구조 풀림 방지형 교량 볼트	(주)두드림테크	2020-300	중소기업기술마켓 (SOC 공공기관 협의체)
15	태양열 흡수 저감 차열 외벽 방수 도료재	주식회사 두온에너지원	2020-309	중소기업기술마켓 (SOC 공공기관 협의체)

※ 1~6번 제품(NET 및 공모우수제품) →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 서류 제출
 7~15번 제품(중소기업기술마켓) → 한국도로공사로 서류 제출

[붙임1]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

혁신제품 지정기간(2차 연장) 신청서

혁신제품명						
혁신제품 지정번호			혁신제품 지정기간			
회사개요	회사명			사업자번호	- 생략	
	주 소	(□ -)				
	행정 담당자	직위/성명			부 서 명	
		전화번호			FAX번호	
기간연장 신청사유	아래 4가지 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에 '√' 체크 할 것 (중복체크 가능)					
	번호	지정기간 연장 '신청' 사유			해당여부	
	1	1차 연장기간(1년) 동안 국·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			()	
	2	1차 연장기간(1년) 동안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			()	
	3	1차 연장기간(1년) 동안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·표창			()	
	4	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- 공공기관의 구매확약에 해당			()	
기간연장 제외여부	아래 2가지 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에 '√' 체크 할 것 (중복체크 가능)					
	번호	지정기간 연장 '제외' 사유			해당여부	
	1	혁신제품에 적용된 특허·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이 만료된 경우			()	
	2	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			()	
	3	혁신제품 지정제품 중 우수조달제품(조달청)으로 지정된 경우(물품식별번호 기준)			()	

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3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.

2024 . . .

업 체 명 :

대표자명 : (인)

국토교통부장관 귀 하

[붙임3] 납품실적목록

※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확인 곤란한 경우(예 : 혁신장터 미등록 구매실적, 해외 공공조달실적 등)에 한함

혁신제품 납품실적 목록

번호	물품식별 번호	규격명	수량	금액(원)*	납품처		납품일자	비고
					국내/해외	기관명		
1								
2								
3								
4								
5								
6								
7								
8								
9								
10								

* 해외실적의 경우 제출일 기준의 원화 환율로 산정하여 기입

주) 혁신제품 1차 지정 연장기간(1년) 내 납품실적에 한하며, 위 표의 각 항목에 대해 **물품납품실적 확인서와 세금계산서, 수출입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**를 붙임자료로 첨부할 것 (단, 물품납품실적 확인서 등 증빙자료에는 반드시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되어야 함)

[붙임4] 구매확약서

혁신제품 구매확약서

<p>■ 동 자료는 연장타당성 심사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수요기관 구매확인 목적으로 활용</p>		
구매확약 수요기관	기관명	
	담당자명	
	연락처	
<p>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, 제17조(개인정보의 제공), 제18조(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·제공 제한), 제22조(동의를 받는 방법) 및 제24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)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.</p>		
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?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
동 자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였으며, 관련 내용에 따라 작성 자료 등이 심사 절차에 활용함에 동의하십니까?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
<p>본 기관은 아래 혁신제품의 규격, 조건이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임을 확인하여 향후 구매를 희망합니다.</p>		
혁신제품	(혁신제품 지정번호) (혁신제품명)	
기업정보	(기업명) (사업자등록번호)	
구매확약 희망규격	(모델명) ☞ 다수 규격 희망 시 필요 시 별도 붙임 생성 가능 (물품식별번호) ☞ 다수 규격 희망 시 필요 시 별도 붙임 생성 가능	
활용목적	자율기재	
<p>※ 본 구매확약은 별개의 법적 효력은 없으나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시 참고자료로 활용</p>		
<p>년 월 일</p>		
기관명 :	구매부서명 :	
	구매부서장 :	(인)
<p>※ 해당 혁신제품 구매와 연관된 부서가 날인하며, 부서장은 공무원 4급 이상, 공공기관 2급 이상 혹은 이에 준하는 직급에 한함</p>		
<p>국토교통부장관 귀하</p>		

